

의안번호	2217113
의 퇴 인	박균택 의원
회 답 일	2026. 3. 11.
추계번호	26A1063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8조(보고·조사 및 시정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. 다만,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 등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음(제3항) - 1.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투자할 자금(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자본재의 도입·사용·처분에 관한 사항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8조(보고·조사 및 시정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사(또는 조사 요청) 대상에 외국인이 “투자할” 자금 및 자본재의 도입·사용·처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, 조사 요청 기관에 “국가정보원장”이 포함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조사(또는 조사 요청) 대상은 외국인이 “투자한” 자금 및 자본재의 도입·사용·처분에 관한 사항이나, 개정안은 외국인이 “투자할” 자금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
 - 또한, 이러한 조사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뿐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- 이때,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 등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음(안 제28조제3항단서)

□ 다만,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해당 자금 및 자본재의 도입·사용·처분에 관한 사항을 추정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국가데이터처의 산업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보면, 2025년 4/4분기 기준으로 신고건수는 총 1,037건, 유치 금액은 총 15,386백만불 규모임

[표 1] 산업별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(2025년 분기별)

(단위: 건, 백만불)

	2025.1/4		2025.2/4		2025.3/4		2025.4/4	
	신고건수	신고금액	신고건수	신고금액	신고건수	신고금액	신고건수	신고금액
합 계	863	6,399	950	6,698	970	7,568	1,037	15,386
농·축·수산·광업	3	21	4	6	8	1	3	18
제조업	118	2,319	128	3,000	131	3,425	153	7,029
서비스업	714	3,564	784	3,527	793	4,027	850	7,933
전기·가스·수도· 환경정화·건설	28	495	34	165	38	116	31	405

자료: 국가데이터처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